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78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597,620원, 지방교육세 117,770원 및 농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촌특별세 78,520원 합계 총 1,793,91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2007. 8. 6.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B이 가지고 있던 [redacted]군 C지구 일원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골프장, 세계문화테마파크 등 관광 · 레저시설, 상업 · 업무시설, 바이오농업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 · 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2007. 9. 18.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2015. 10. 7. 국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redacted]군 D 외 60필지 74,757.40㎡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면제)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 4. 10. 충청남도조례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고,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2015. 6.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 중 E, F, G, H, I의 5필지 1,2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게 숙박시설 부지로 매각하였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취득세 1,597,620원, 지방교육세 117,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8,520원 합계 총 1,793,91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 상 개발대상토지는 '직접사용대상토지, 분양대상토지, 기부채납대상토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분양대상토지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한 후 J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다.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7. B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태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2) 피고는 B과 2007. 7. 23. 이 사건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는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 매각대상 및 무상귀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기로 되어 있다.

3)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18. B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고, 위 개발계획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토지이용 사항을 직접 사용, 분양,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양대상 토지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11. 28.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J과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형지[1] 상태에서 매매하고, 이를 매수한 J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숙박건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상수, 전기, 통신 등 각종 유틸리티시설을 설치하며, 관련된 비용부담 및 민원해결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5) 원고는 2016. 1. 21.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J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토지를 조성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동법 제21조 제1항)와 원형지(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도시개발법 제25조 제1항)으로 구별하여 처분방법을 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21 제2항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8조 제1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본다. 비록 이 사건 개발사업상 이 사건 토지가 분양(매각)대상으로 정해져 있었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를 개발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한 뒤 매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하기 전에 J에 매도한 점, 원고와 J간 매매계약에 의하면 J의 책임과 비용하에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고, 위 계약과 달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를 국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상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된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숙박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설용지 외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J에게 도로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동희

판사 정문식

판사 함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 4. 10. 충청남도조례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8

다.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2015. 6.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3.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